

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2020. 11. 26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40호
- 나. 제 출 자 : 박 찬 길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0. 11. 17(수)
- 라. 회부일자 : 2020. 11. 17(수)

2. 제안이유

사회공익을 위한 청소년 보호 육성에 앞장서고 아동안전지킴이 활동과 학교폭력추방 및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 등으로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금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재향경우회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」 제15조
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3)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2020. 3. 31. 개정됨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금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0. 11. 17. 박찬길의원이 발의하였음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정의 규정하였고

안 제3조에서는 재향경우회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

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에 관하여 규정함.

안 제5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르도록 규정함.

○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,

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사회질서 유지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금천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: 관련 법령 1부.

[참고사항 1]

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

연번	자치단체명	주요내용	비고
1	충남 공주시	지원사업	
2	남양주시	지원대상, 보조금지원, 정산보고	
3	남원시	지원대상 사업	
4	성남시	예우, 지원대상,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	
5	속초시	사업지원, 지원범위, 중복지원 금지, 지원신청 및 결정	
6	안성시	사업지원, 보조금지원, 결산보고 등	
7	전북 완주군	지원사업, 사업계획 승인, 정산보고 등	
8	의정부시	지원 대상사업, 사업계획 승인, 정산보고 등	
9	인천광역시 서구	지원사업, 보조금 지원, 사업계획 승인, 정산보고 등	
10	인천광역시	지원사업, 보조금의 지원	
11	인천광역시 중구	지원사업, 보조금 지원, 신청 및 정산	
12	함양군	지원범위, 교부 신청, 지원 중단	
13	횡성	지원사업, 신청 및 정산, 지원금의 반환	

[참고사항 2]

금천 재향경우회 현황

단체현황

단체명	서울 금천재향경우회		대표자	서 기 만
주 소 (사무실)	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 금천경찰서 별관(2층) 경우회		전 화 번 호	02-868-5225
조직 현황	대표자	서 기 만		회원수
	사무국장	석 상 무		250명
	e-mail	anhs6723@daum.net		
설립목적	경찰치안협력 및 사회공익을 위한 청소년보호육성			
단체성격	경찰치안협력 및 사회공익을 위한 봉사활동			

최근 예산지원 현황

연도별	지원액	사업내용	비고
2020년	8,000천원	아동안전지킴이 활동, 학교폭력추방 및 청소년 범죄예방 캠페인	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
2019년	3,000천원	청소년 범죄예방, 비행청소년 선도, 학교폭력추방 캠페인 등	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
2018년	4,400천원	청소년 범죄예방, 비행청소년 선도, 학교폭력추방 캠페인 등	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

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

[시행 2020. 7. 1.] [법률 제17167호, 2020. 3. 3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(大韓民國在鄉警友會)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3. 31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2조(법인격 등) 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(이하 “경우회“라 한다)는 법인으로 한다.

②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3조(정관)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명칭
2. 사무소의 소재지
3. 사업에 관한 사항
4. 회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
5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6.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
7. 자산·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9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3조의2(사업)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경우회 회원(이하 “회원“이라 한다)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
2.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
3.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
4.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
5.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
6.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
7.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
[본조신설 2011. 5. 30.]

제4조(회원의 자격)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1. 5. 30.>

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,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5조(조직)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, 시·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1. 5. 30.>

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, 시·도회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도청(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소재지에,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. <개정 2011. 5. 30.>

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, 시·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1. 5. 30.>

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·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5. 30., 2020. 3. 31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6조(총회) ① 총회는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.

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7조(총회의 소집)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8조(회의 및 의사)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9조(총회 의결에서의 특례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1. 5. 30., 2020. 3. 31.>

1. 정관의 변경
2. 삭제 <2020. 3. 31.>
3. 예산·결산 및 주요 사업계획
4.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
5.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10조(총회의 의사록) ① 총회의 의사(議事)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11조(이사회) ① 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.

③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

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12조(중앙회의 임원) ① 경우회의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<개정 2011. 5. 30.>

1. 회장 1명
2. 부회장 약간 명
3. 사무총장 1명
4.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
5. 감사 2명

②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(選任)하고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0. 3. 31.>

③ 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경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⑥ 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(監査)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[제목개정 2011. 5. 30.]

제13조(시·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) 경우회의 중앙회, 시·도회(특별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

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. <개정 2011. 5. 30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[제목개정 2011. 5. 30.]

제14조(사무부서) ① 경우회의 중앙회, 시·도회 및 지역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1. 5. 30.>

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15조(재정)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1. 5. 30.>

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1.>

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3. 31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16조(감독)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1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제17조 삭제 <2000. 1. 28.>

제18조 삭제 <2000. 1. 28.>

부칙 <제17167호, 2020. 3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총장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사무총장부터 적용한다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[시행 2020. 1. 1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76호, 2019. 12. 31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,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지방보조금“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“라 한다)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,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

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
2. “지방보조사업“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.

3. “지방보조사업자“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